

의안번호	2209730
의 퇴 인	전진숙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2.
추계번호	25C2211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조의3 (사회복지사 등의 보수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조의4 (사회복지사 등의 장기 근속휴가 지원) 제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근속휴가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※ 동조 제1항: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3	안 제3조의5 (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의3 (사회복지사 등의 보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조의4 (사회복지사 등의 장기 근속휴가 지원) 제2항	
3	안 제3조의5 (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향상(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), 장기근속휴가 부여,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노력 및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”을 제시하고 있으며, 동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 -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.5%, 지방이양시설이 106.2%(실태조사 준수율 = $\sum$ 개인별 보조금 기본급 / $\sum$ 가이드라인상 해당 직급 및 호봉 기본급)
 - (안 제3조의3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,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할 경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액이 증액될 수 있음
 - (안 제3조의4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(안 제3조의5)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향 조정될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알 수 없고,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사회복지법인의 수와 이들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

추정하기 어려우며,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·교육의 내용과 소요 재정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